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안도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의자 : 안도걸 · 한병도 · 위성곤  
정준호 · 임호선 · 민형배  
여기구 · 박균택 · 정일영  
조인철 · 박홍배 · 김문수  
조승래 · 박정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 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일부 재화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납부의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.

특히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매출

매입 자료의 관리 및 검증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보다 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”를 “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”로, “사업자”를 “사업자(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의 16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)”로, “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고자동차”를 “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2. <u>중고자동차</u> : 110분의 10  ② · ③ (생 략)	2. <u>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</u> <u>신단말장치</u>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